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일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경쟁정책연구센터」설치

공정위 경제거래국 경제조사과장(佐味祐介)의 경쟁정책연구센터 발족에 즈음한 소견

#### 1. 발족 경위

6월 17일(화), 경쟁정책연구센터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 연구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훈령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조직으로 발족된 것으로 기본적인 목적은 눈앞의 시책 실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점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으로부터 독점금지법의 운용과 경쟁정책의 기획·입안·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론적인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연구자와 실무가의 자격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의 기능적·계속적인 협동의 장의 정비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독자적 연구체제를 정비, 경

쟁정책당국으로서의 지적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내외의 장기적인 요청에 응하는 것이며, 향후 실질적인 연구성과의 축적과 국내외로의 전파에 의해 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 기대된다.

경쟁정책연구센터의 초대소장에는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연구소의 스즈무라 고타로(鈴村 興太郎) 교수가 취임하였다. 그는 사회적 선택 등 후생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폭 넓은 분야에서 수 많은 연구활동과 인재육성에 종사해 왔으며, 또한 유럽과 미국(歐米) 학회 및 대학에서 수 많은 국제적 공헌을 해 온 석학이다. 이외에도 기백이 날카로운 젊은 경제학자 6명, 법학자 5명이 객원연구원에 취임하였다.

#### 2. 경쟁정책연구센터에 기대되는 역할과 효과

경쟁정책연구센터가 해낼 역할은 주로 다음의 4가지이다.

- ① 정책파제 추출기능의 강화
- ② 법운용에 도움이 되는 경제분석방

법의 확립과 검증

- ③ 정책평가기능의 확립
- ④ 외국과의 연구교류의 충실

이러한 활동을 축적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 (1)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인 연구기반의 강화
  - 경쟁정책에 관한 장기적·기초적인 이론측면의 충실과 연구체계의 강화

- (2) 학계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동의 장 마련

- 사무총국(事務總局)내 각 부서의 연구인재의 지속적 육성
- 내외인재교류의 창구역할 기능

- (3) 법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융합한 연구추진
  - 독점금지법학자의 법학적 관점과 경제학자의 경제학적 관점을 융합한 연구 실시

#### 3. 연구주제

동 센터의 연구주제에 대하여는 학계, 산업체, 정책현장으로부터 여러 방면에 걸친 수요(need)가 예상된다.

‘현저히 진보된 유럽과 미국의 경쟁정책체계와 같은 위치에 서서 기술 혁신, 정보화, 환경문제 등의 플러스·マイ너스 외부효과와 진전하는 비가격경쟁을 어떻게 시장화(市場化)하고, 최적의 경쟁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경쟁정책 체계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이 공익적인 분야(에너지, 정보, 우편, 육해공의 운송 제분야 등)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분야(고용, 교육, 의료·복지, 농업·등)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경쟁 상황의 파악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자유스럽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행정을 보는 국민의 눈이 점점 냉엄해지는 상황하에서 「독점금지법의 운용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축적하고 설명책임을 완전히 해 낼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에 공헌하여야 한다.

〈경쟁정책연구센터의 스즈무라 고타로(鈴村 輿太郎) 소장의 취임사 요지〉

〈일본의 산업정책〉과 〈일본의 경쟁정책〉이라는 2가지 연구과제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본인은 일본의 경쟁정책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안건에 관한 조사

기능과 경쟁정책의 입안기능을 넘어 연구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쟁정책연구센터가 마침내 발족하고 초대소장으로 초빙된 것을 경제의 제도적 틀의 설계와 개혁에 관심을 가진 후생경제학자로서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은 센터가 향후 담당해야 할 임무로서 다음에 언급한 3가지의 과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경쟁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경쟁정책의 현장과의 연계를 더 한층 긴밀화하는 것, 학술적인 연구자가 현실의 경쟁정책 과제와 부단히 접촉하는 경험으로부터 문제감각을 첨예화할 기회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것, 경쟁정책집행의 측면에서도 학술적인 연구의 첨단적 업적에 시의 적절하고 적확하게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하여 일본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한 진행을 배경으로 제도설계자와 정책평가자의 관점으로부터 부단히 체크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무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역사적 사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의 경쟁정책의 설계와 실천의 정보적 기초를 풍요롭

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적어도 포용력이 있으며 눈앞의 이해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경쟁정책에 관하여 진지하고 솔직한 열려있는 장(platform)으로 기능하는 그러한 센터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일본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지기반은 더욱 확대되고,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센터의 초대소장에 임명된 본인은 객원연구원의 책임을 맡은 경제학자·법학자를 비롯하여 일본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설계·입안·평가·분석에 관심을 가진 경제학·법학연구자의 지원과 조언을 환영하며 경쟁정책연구센터의 조직으로서의 성숙과 세계적 수준의 저작생산성의 확립에 미력하나마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 공정위, 홋카이도 통나무협회에 대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홋카이도 통나무협회에 대해 그 동안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동 법 제8조제1항제1호(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통나무 및 통나무 소재의 상품 특성을 살린 공법의 연구와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홋카이



도 통나무협회는 훗카이도 지역에 소재하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연약지 반상의 성토안정 공법인 파일 넷 공법을 채용한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통나무를 파일 넷 공법을 채용한 토목공사를 수주한 토목공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각 협회원의 연간 판매수량 비율을 정하고 토목공사업자에게 통나무를 판매할 협회원을 정해 그 외의 회원들은 판매하지 말 것을 규정하여 협회원이 연간 판매수량 비율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협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협회가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2003. 8. 11.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위, 태평빌딩서비스 주식 회사에 대해 동의심결

공정위는 피심인 태평빌딩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해 지난 6월 11일 심판개시 결정을 한 이후, 7월 25일 피심인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제53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심사및심판에관한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해 동의심결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한편 피심인 자신이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적당한 조치라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8월 7일 독점금지법 제53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동의심결을 하였다.

피심인과 21사는 1998년 3월 1일 이후 임야청 삼림관리국, 아마구치 삼림관리사무소, 아마구치현의 기관, 아마구치현 교육재단, 아마구치현 시설관리재단, 아마구치현 사회복지사업단 및 아마구치 소방조합(이하 야마구치 지역 관공서) 등이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야마구치 지역내 건축물 내부 청소업무(이와 동시에 발주되는 건축물 외부 청소업무 및 쓰레기 처리업무 포함)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다음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야마구치 지역의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청소업무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피심인과 13사는 1998년 3월 1일 이래로 국토교통성 큐슈지방 정비국, 아마구치현의 기관, 시모노세키현의 공영시설 관리공사 및 시모노세키시 문화진흥재단의 관공서 등에서 지명경쟁입찰방법에 의해 발주하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지역 건축물 내부의 건축물 청소업무 등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시모노세키 지역의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청소업무의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독점금지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피심인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한다.

② 피심인은 ①에 근거해 취한 조치 및 향후 청소업무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관공서 등에 통지한다.

③ 피심인은 향후 기존의 수주조정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03. 8. 8. 공정거래위원회

## 미국

## ■ FTC, 운송업자의 반경쟁행위 금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미네소타주와 아이오와주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해 동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운송서비스협회(the Minnesota Transport Services Association; 이하 MTS)와 아이오와운송·창고업협회(the Iowa Movers and Warehousemen's Association; 이하 IMWA)는 이들이 속한 지역에

서 자신들에게 국가행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한 집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을 통해 양사는 미네소타주 및 아이오와주와의 협의하에 정해진 요금체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가행위이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나선 것이다”라고 Joe Simons 경쟁국장은 말하면서, “이 화해안으로 인해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그 지역내에서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경쟁요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와 주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네소타주에서는 운송업자들이 각각 자신들이 적용할 요금을 신고하도록 주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적인 요금체계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폐지했다고 Simons 국장은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은 지난 봄에 의회를 통과하여 2003년 6월 8일에 발효되었다.

국가행위이론(the state action doctrine)이란 사기업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나 주 당국은 사기업에게 단순히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국가행위이론을 반경쟁적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문제된 경쟁제한행위가 국가정책으로서 분명히 제시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는 그 정책은 반드시 국가나 주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단체인 MTSAs 미네소타내의 89개 가정용품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요금을 책정하고,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미네소타주 당국과 요금협상을 벌이는 일이다. IMWA는 아이오와에서 가정용품 운송사업을 하는 약 70여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역할은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주 당국과 요금결정을 하는 것이다.

MTSA와 IMWA에 대한 FTC의 주장은 유사하다. 이 두 사건에서 FTC는 이 단체들이 집단적 요금을 책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FTC법에 위반되는 여러 행위들을 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들의 결과,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에서는 가정용품 운송요금이 고정되었다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운송요금의 할인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된 한도 안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FTC에 의하면, 이 사업자단체들은 주 내에서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이나 요율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들간 합의나 협의를 위한 회합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요금은 인상되거나 고정되었으며, 가정용품 운송업에서 소비자들은 경쟁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FTC가 양사에 제시한 동의명령의 내용은 유사한데,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행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향후 운송요금에 대한 집단적 책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동의명령안에는 MTSAs와 IMWA가 구성사업자들이 요금율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또한 요금 인상을 위한 모임들을 설립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동의명령에서는 MTSAs와 IMWA가 주내 운송에서 그 동안 사용되었던 요금체계를 취소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의명령에는 이 단체들이 구성사업자들에게 더 이상은 집단적 요금책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동의명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FTC에 알려야만 한다. 이 동의명령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2003. 8. 1. 연방거래위원회



## DOJ, 항공사들의 합작투자 인정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이하 DOJ)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Orbitz 합작회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Orbitz사는 미국내 5대 주요 항공사가 공동출자한 회사로서 여행에 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DOJ의 이번 조사는 출자항공사들간의 최혜국대우조항과 이른바 “charter associates”라고 불리는 합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charter associates란 출자항공사들이 제3자나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겠다는 공개된 요금과 동일하게 Orbitz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DOJ는 Orbitz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

Orbitz 합작회사는 1999년 11월에 United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Delta Airlines 및 Northwest Airlines가 공동으로 세운 여행전문 웹사이트이다.

American Airlines는 이 웹사이트가 유명해지자 후에 참가하였다. 나중에는 40여 개가 넘는 외국 및 미국 항공사들이 “charter associates”가 되었다. 모든 Orbitz 출자회사들과 제휴사들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Orbitz를 통해 판매된

항공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을 뿐만 아니라 Orbitz에서만 독점적인 요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된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합작투자는 궁극적으로는 경쟁촉진적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수평적인 경쟁자들 사이에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공동 행위를 하게 되어 심각한 경쟁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DOJ는 그 동안 조사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Orbitz 조인트벤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한 후, 독점금지국은 Orbitz 조인트벤처가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항공기 이용자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Orbitz사 및 제3자가 제공한 서류들에 대한 검토 및 항공기 예약자료들을 포함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내려졌다”고 말하면서, “독점금지국은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몇 개의 이론을 고려하였다. 여기서는 Orbitz의 계약내용이 참가항공사간 협력을 촉진시키거나 할인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높은 요금이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계약내용이 Orbitz 합작회사로 하여금 온라인 항공여행업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형성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독점금지국은 계약내용이 높은 요금

을 유도하지도 않으면 온라인 항공여행업에서 Orbitz를 지배적인 지위에 있게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3. 8. 1. 연방법무부

EU

## 유럽위원회, 포켓몬 씰·카드 판매업자에게 이의고지서 송부

유럽위원회는 유아에게 인기 있는 콜렉션 씰(seal)과 카드를 제조하는 Topps가 포켓몬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안이 프린트 된 상품의 국가간 거래를 방해한 것에 대해 정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유럽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 기간에 상표권자인 Nintendo(任天堂)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제조되고 있는 유명한 작은 카드의 핀란드에서의 판매가격이 포르투칼 판매가격보다 2.5배 높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유럽위원회가 입수한 증거에 의하면 Topps와 그 판매업자는 가격이 낮은 국가로부터 높은 국가로의 수입을 방해하기 위해 정교한 전략을 채택, 유럽의 가정을 희생하고 EU 역내 통일시장내의 경쟁을 왜곡시켰다.

「국가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협정 및 그 실행은 소비자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반트러스트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언급했다. 「유럽위원회는 지금 까지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와 싸워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본 건은 Topps Europe Ltd. 및 미국 Topps Company Inc.의 다른 유럽자회사 3사와 함께 영국, 이탈리아, 필란드, 독일, 프랑스 및 스페인의 판매업자에 의한 협정 및(또는) 협조적 행위에 관한 것이다. 본 건 행위의 목적은 Topps Europe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나라로부터 비싼 나라로의 「수출의 완전한 금지」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본 건 행위는, Topps 그룹 5개사에 송부 된 이의고지서에 상세히 기재된 대로 EC조약 제81조 하드코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2000년 1년간 거의 계속 행해져 왔다고 판단된다. 유럽위원회의 심사는 2000년 말 신고에 의해 개시되었다.

본 건의 관련상품은 포켓몬의 도안이 프린트 된 콜렉션 카드와 씰(seal)이다. Topps는 상표권자인 일본의 Nintendo로부터 이러한 상품의 제조를 위해 포켓몬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받고 있다.

씰과 카드를 수집하고 그것을 교환하는 것은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오락이며, 특히 영화와 문학 또는 스포츠 분야의 인기스타 사진이 프린트 된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상품은 아이들의 용돈을 빼앗기 위해 통상 잡화점과 신문·잡지판매점에서 수 개씩 들어있는 팩으로 판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추계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구입하는 씰, 카드 등의 수집자들(collectors) 아이템이 차지하는 2000년 유럽경제지역(EEA)의 시장규모는 6억 유로에 달한다.

1999년 가을 포켓몬 카드의 대유행이 유럽에도 밀어닥쳤다. 2000년에 Topps가 판매업자에게 출하한 가격은 회원국 각국에 따라 크게 달라서, 프랑스 판매업자는 같은 수량의 상품에 대해 스페인 판매업자의 2배 가격을 지불하였다. 가장 큰 출하가격의 격차(243%)는 필란드와 포르투칼의 판매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포르투칼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이었다. 당연하게 이로써 병행수입 즉,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나라가 싼 가격에 판매하는 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와 상세한 정보에 의하면 2000년 Topps는 포켓몬 상품이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나라(필란드, 프랑스 등)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나라(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

략으로 판매업자를 유인하였다.

Topps는 병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동 사에 의한 병행수입의 추적 및 포켓몬 상품의 최종목적지의 감시를 도와줄 것을 EU 회원국 판매업자에게 계속하여 요청했다. Topps의 판매전략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공급을 거절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 위법한 유럽시장 분할의 결과, 상품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 나라의 가정은 만약 경쟁적인 시장기능이 활발하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것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했다.

Topps는 2000년 11월에 유럽위원회로부터 정보제공요구를 받은 후 경쟁법을 준수하는 판매계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제안했다. 이후로 동 사가 경쟁법 위반행위를 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병행거래의 제한은 EC조약 제81조 위반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병행거래가 EU에 있어서 효율성 증대와 가격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런 이유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의고지서의 송부는 반트러스트 심사에 있어 정식절차의 시작이다. 관계 기업은 2개월 이내에 유럽위원회의 이의에 회답하고 구두청문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다.

2003. 6. 19. 유럽위원회 발표문  
(2003. 7월호 경쟁취인(일본) 발췌)



## ■ EU위원회, 종자유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인정

유럽 위원회는 ADM(Archer Daniels Midland International Ltd.)이 유니레버사의 종자유(seed oil) 및 이를 이용한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부문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ADM사는 종자유 및 제과점용 기름 시장에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영국의 ADM은 미국의 ADM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옥수수나 소맥 등을 이용한 종자유를 판매하고 농산물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영국 유니레버사(Unilever Bestfoods UK Limited.)의 사업부문인 VDBO는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Essex에서 종자유 정제업을 하고 있으며, 팩에 담아 파는 제과점용 기름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대용량의 종자유 시장, 팩에 담아 파는 종자유 및 제과점용 기름 시장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번 기업 결합이 어떠한 경쟁상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합기업들이 일련의 종자를 이용한 종자유 시장 즉, 해바라기씨 기름이나 포도씨 기름 시장에서 높은 시

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높은 신규진입 가능성 및 잠재적 경쟁이 경쟁사업자의 사업역량이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2003. 8. 1. EU위원회

## ■ EU위원회, 네덜란드 건축자재 업자간 기업결합 승인

유럽위원회는 건축재료 생산업체인 Cementbouw와 ENCI간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이 회사를 은 모두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ENCI의 골재 사업을 포함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협정을 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합작회사는 콘크리트 양산이나 아스팔트에 필요한 모래나 자갈 등과 같은 골재를 생산 및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Cementbouw 사와 합작회사의 결합시장점유율이 네덜란드내에서 낮은 수준이고 시장 지배적인 지위가 형성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덜란드 시장에서 수직적 관계에 있는 레미콘 시장에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레미콘 시장은 골재 시장의 전방에 위치해 있

으며, 이 레미콘 시장에서 ENCI와 Cementbouw는 모두 시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이 골재 수요자(레미콘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모회사간의 담합이 조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Cementbouw와 ENCI는 레미콘, 몰타르, 골재 및 건축관련 자재들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ENCI는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편 Cementbouw는 현재 투자회사인 CVC Capital Partners Group이 지배하고 있다.

2003. 8. 4. EU위원회

## ■ EU위원회, 필립스와 소니의 CD 라이센싱 프로그램 승인

EU위원회는 CD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필립스사와 소니사 간의 양자협정을 승인했다. 또한 EU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회와의 협의하에 결정된 기본 합작 라이센스 협정도 승인했다. 이 기본 라이센스 협정은 오직 필립스나 소니가 보유한 CD Audio, CD ROM, CD TEXT 및 CD Extra discs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의 CD 디스크를 제작하기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특허에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여러 유형의 CD를 제작함에 있어서 필립스와 소니의 특허에 대한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이들의 특허권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 라이센스 협정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위원회가 필립스와 소니의 CD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조사한 후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양사간의 양자협정과 기본 합작 라이센스 협정이 EU경쟁법 제81조와 제8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CD 제조업자들이 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개시되었다.

2003. 8. 7. EU위원회

## 독일

### 연방카르텔청, BASF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BASF사가 Bayer Crop Science(이하 Bayer)사의 농작물 보호 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으로 BASF는 살충제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훨씬 초과하는 1위 시장점유율을 획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집중을 막기 위해

연방카르텔청과 BASF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최소 5년간 독점적인 판매허가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식거래로 Bayer는 지난 2001년에 자사와 Aventis Crop Science사의 기업결합시 EU위원회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Bayer는 농작물보호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바 있었다.

2003. 7. 17. 연방카르텔청

게 되었다. 기업의 책임자들은 이번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을 통해 자신의 기업들이 불법한 카르텔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신한 기업들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감경하였다”고 말했다.

2003. 8. 12. 연방카르텔청

## 호주

### ACCC, 하드코어(hard core; 경성) 카르텔 적발을 위한 leniency(감면) 정책 시행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금일 호주에서 행해지는 기업의 비밀 카르텔을 적발,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leniency 정책을 발표했다.

본 정책은 2003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본 정책은 기업들과 임직원들로 하여금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과 같은 매우 중대한 공모에 의한 경쟁법 위반행위를 누설하고 폭로하도록 조장한다.

「본 정책은 법위반 기업 및 임원들에게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즉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ACCC에 동 위반행위를 보고하면 그에 대한



답례로 명백하고 투명하여 확실한 제재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Allan Fels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러나 본 정책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본 정책은 경쟁당국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 가장 최초의 기업 또는 임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사람은 적발되어 심사를 받고 증거가 확보되면 소추되게 된다.」

「법위반 기업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자기의 동업자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여야 한다.」

본 정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CCC가 카르텔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최초로 제안한 자(기업 또는 개인)는 ACCC에 의한 소송 절차 개시로부터 조건부 「면제」를 받게 된다.

- ACCC가 카르텔을 인지하기는 하였으나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최초로 제안한 자(기업 또는 개인)는 제재금 지불명령으로부터 조건부 「면제」를 받게 된다.

본 정책은 영국, 미국, 캐나다 및 유럽위원회 등에서 카르텔의 적발에 국제적으로 이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각각의 leniency 정책과 관련하여 마련되었다. ACCC는 작년 7월에 공표된 leniency 초안에 대한 장기간의 public consultation을 거쳐 본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정책은 현재

운용중인 「집행사안에 있어서의 협력정책」과 연계하여 운용될 것이다.

「하드코어 카르텔은 가장 나쁜 경쟁 법 위반행위이다. 하드코어 카르텔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언제나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해를 끼친다. 하드코어 카르텔은 혁신을 저해하고 호주 산업의 경쟁력을 감퇴시키며, 고용기회를 제한하고 경제성장을 막음으로써 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주에 있어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국내 및 국제적 하드코어 카르텔을 적발·배제하고 억지하는 것이 ACCC 임무에서 가장 중요하다. 수년간 ACCC는 비타민, 콘크리트, 운임, 방화장치, 변압기, 그 밖의 많은 주요한 카르텔 적발에 성공을 거두어 왔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ACCC는 다수의 임원 및 기업을 소추하였고, 그들은 수 백만 달러의 제재금 지불명령에 직면하게 되었다.」

「카르텔을 분쇄하기 위한 ACCC의 가장 중요한 집행업무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현행 민사제재제도(civil penalty regime) 하에서 카르텔에 관여한 기업은 위반 건당 최고 1,000만 달러의 제재금 지불을 명령받게 된다. 또한, 동 기업의 임원은 위반 건당 최고 50만 달러의 제재금 지불명령에 직면하게 된다. 1974년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1874) 경쟁관련조항에 대한 최근의 재검토(Dawson Review)는 (2003년 4월 16일 보고서 공표) 가장 중대한 하드코어 카르텔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임원에 대한 금고형 및 고액의 벌금 가능성을 포함한 형사벌이 도입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leniency 정책이 카르텔 행위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ACCC는 Dawson Review의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이 leniency 정책이 현행의 민사제재제도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하드코어 카르텔에 대한 형사벌을 도입하는 법개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ACCC는 그와 같은 개정에 비추어 동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ACCC는 하드코어 카르텔에 관여한 범죄에 대한 leniency 정책에 대해 DPP(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 공소국장관) 및 법무장관과 제휴해 나갈 것이다.」

「ACCC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leniency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이다.」

leniency 방침의 사본은 ACCC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국제적인 leniency 방침 및 하드코어 카르텔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www.oecd.org/daf/clp\\_reports/hcce.pdf](http://www.oecd.org/daf/clp_reports/hcce.pdf) 참조 바랍)

2003. 6. 27.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발표문  
(2003. 7월호 경쟁취인(일본) 발췌)

## ACCC,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대표소송에서 승소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는 7년 전에 시작한 대표소송을 통해 총 35만 2천 달러를 5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돌려주었다. 이 손해배상금은 지난 1996년에 가맹점사업자들이 Top Snack Foods사와의 문제로 ACCC에 신고함으로서 시작된 소송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ACCC는 지난 1997년 연방법원에서 5명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 왔다. 1999년 6월에 탬벌린 판사는 Top Snack Foods사가 공정거래법(Trade Practices Act 1974)을 위반하여 허위 및 사기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이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George Manera 와 Nick Kritharas씨도 고의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탬벌린 판사는 당시 사적인 이익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옹호하기 위해 ACCC가 수행하는 이러한 재판절차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소송은 지난 1998년 호주에 프랜차이즈사업법이 도입되기 전에 시작되었다.

7년의 기간 동안 회사의 재산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청산절차를 밟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ACCC는 고등

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는 지리한 싸움 끝에 청산재산을 경매에 붙이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CCC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 대표 소송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집행한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Graeme Samuel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ACCC는 중소사업자들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있는데, ACCC는 현재 프랜차이즈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업분야를 감독하고 있다.

2003. 8. 1.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 영국

### 경쟁위원회, 신고된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 조사서한 발송

경쟁위원회는 Arla Foods amba 와 Express Dairies plc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슈레터를 발송했다. 위원회는 양사, 이해관계자 및 다른 출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이슈를 구체화했다. 이렇게 이슈를 정리하는 것은 해당

기업결합이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레터는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 회사들에게 항상 보내도록 되어있으며, 조사대상 기업이 검토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놓치게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슈레터를 작성하는 또 다른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위원회가 인지한 것 이외의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번 이슈레터에서도 위원회는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관련시장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구매관행 및 공급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획정을 검토하기를 원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슈퍼마켓 시장, 중산층 소비자 및 택배는 독립적인 관련시장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시장은 국내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국내 시장을 더 나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공익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기대했다.



① 주요 공급자들의 수적인 감소가 실질적인 경쟁의 감소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② 국내 슈퍼마켓들이 상당한 구매력을 여전히 보유할 것인지 여부

③ 공급자들의 수가 감소함으로써 남아있는 사업자들간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성이 증가하는지 여부

④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없는 효율성을 본 건 기업결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익이 최종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지 여부 등

이와 함께, 만일 경쟁위원회에서 이 기업결합이 공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당해 기업결합의 역효과가 사업자들을 분할함으로써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②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업결합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2003. 8. 1. 경쟁위원회

## 캐나다

### 캐나다 경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캐나다 정부는 금일 캐나다 경쟁법의 개정안에 대해 캐나다 국민에게 의견조회절차를 개시한다고 공표했다. 경쟁법 개정안에는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중요한 구제수단으로서의 반환명령(restitution)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입법제안에 대해서는 「Options for Amending the Competition Act : Fostering a Competitive Marketplace」라는 제목으로 정부 discussion paper에 개설되어 있다.

「반환명령의 도입에 의해 민사사안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이 강화되고, 또한 시장에서의 허위표시가 방지되게 된다」고 Allan Rock 산업부장관은 언급했다. 「이 반환명령에 의해 기만으로써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의 피해자는 경쟁법에 근거하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의회하원의 산업,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2002년 4월 보고서 「A Plan to Modernize Canada's Competition Regime」에 대한 회답에서 개별 입법제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는 뜻을 언급했다.

「반경쟁적 행위는 캐나다의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Rock 장관은 언급했다. 「정부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직면한 경쟁법의 현대화를 공약한

다. 경쟁법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의 의견조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의 discussion paper에는 다음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

- 행정제재금, 반환명령, 민사소송의 대상행위에 관한 경쟁법 민사관계 규정의 강화

(역주: ① 경쟁법원의 제재금 지불 명령의 대상을 거래거절, 배타거래, 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유형에도 확대, ② 기만적 방법으로 판매된 상품·서비스에 관한 반환명령의 도입, ③ 경쟁법 제36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을 기만적 판매행위, 거래거절, 배타거래, 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유형으로 확대)

- 공모 관계 규정의 개정

(역주: 경쟁법 제45조(공모)의 개정, 경쟁제한적인 전략적 제휴에 관련한 규정의 신설, 공모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한 적용면제 승인절차 규정의 신설 등)

- 가격설정 관계 규정의 개정

(역주: 차별적 및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한 형사벌의 적용 폐지 등)

- 캐나다의 시장기능에 관한 조사에 대한 규정의 신설

2003. 6. 23. 캐나다경쟁국  
(2003. 7월호 경쟁취인(일본) 발췌)